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81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 : 윤준병 • 박민규 • 조계원

정동영 · 황명선 · 박용갑

강준현 • 안호영 • 허 영

위성곤 • 민병덕 • 신영대

김태선 · 서영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규정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모순이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境遇"를 "境遇(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승 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1.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의 경우
-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

제111조제1항 중 "申告한"을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境遇"를 "境遇(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의 경우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軍事上 秘密을 要하는 場所는	
그 責任者의 承諾없이는 押收	
또는 搜索할 수 없다. <단서	<u>다만, 다</u>
<u>신설></u>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승
	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u>수 있다.</u>
<u><신 설></u>	<u>1.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u>
	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u>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u>
	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에 대
	한 수사의 경우
<u><신 설></u>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
② 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	②
大한 利益을 害하는 <u>境遇</u> 를 除	
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	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포함하
한다.	<u>지 아니한다)</u>
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①	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	

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關하여는 本人 또는 그 當該 公務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 한 것임을 <u>申告한</u>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 公署의 承諾없이는 押收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②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 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 을 害하는 <u>境遇</u>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법원에 신고하여 허
<u> 가받은</u>
<u>다</u>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
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u>수 있다.</u>
1.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에 대
한 수사의 경우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
②
<u>境</u> 遇(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
다)